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는 “이용자”가 “KEB하나은행 - 스마트폰 banking(이하 ”서비스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신·열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서비스 앱”을 설치하고, 은행의 인증절차와 “서비스” 동의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3.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세, 군세, 구세를 말합니다.
 4. “인증”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식별하고자 하는 절차로서 “은행”은 공인인증서 등의 온라인 본인확인 절차를 사용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말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의 “이용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한다)가 스스로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의 인증 절차와 외부인증을 거친 후 “이용자” 가입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은행”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은행”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가입신청자”가 만14세 이하인 경우
 5.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또는 “은행”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법령 및 기타 “은행”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7. 기존 가입신청자가 중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③ “이용자” 가입 신청은 “가입신청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④ “이용자” 가입 신청시 위택스 전자고지함, 전자우편주소, 또는 타 금융기관 앱을 통해 제공되던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는 자동 해지 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이용 개시)

- ① “은행”은 이용계약이 성립하면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이용 가능한 개별 “서비스”는 “서비스” 및 “이용자”의 스마트폰 이용환경,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여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신청 및 해지
 2. “고지서” 수신
 3. “지방세” 납부
 4. 기타 “은행”이 추가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서비스”의 상세 내용 및 이용조건은 “서비스 앱” 내에 기재한 내용을 따릅니다.
- ③ “서비스” 이용신청 및 해지는 은행 영업일 09:00 ~ 22:0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때의 이용시간은 “서비스 앱”에 게시합니다.
- ④ “은행”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앱”을 통해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⑤ “서비스” 신청시, 다음달 1일 이후 부과된 지방세 고지서부터 수신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기타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은행”은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서비스 앱”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해지)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앱”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해지시 서비스는 자동 해지 됩니다.

제7조 (스마트폰의 변경 및 신고사항의 변경)

- ① “스마트폰”을 변경 한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앱”을 재설치 후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은행”에 이미 신고한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이용자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정보를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은행”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지방세 고지서 수신)

- ① “은행”은 “지방세 고지서”를 “이용자”가 인증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된 “서비스 앱”으로 “은행”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전송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 등이 전송되었음을 알리는 별도의 알림(Push Message)을 “이용자”가 Push 메시지 알림 수신에 대해 동의한 바에 따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전송된 “지방세 고지서”를 “서비스 앱”을 통해 수신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은행”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④ “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지방세 고지서” 및 “고지내역”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지방세 고지서” 및 “고지내역”은 고지서상의 납기후 기간이 경과하면 “은행” 내의 “서비스” 운영시스템에서 삭제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수신된 “지방세 고지서”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서비스 앱” 내에 고지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하여야 합니다. 단, “은행”이 개발한 “서비스 앱”에 대한 문의는 “은행”에 하여야 합니다.
- ⑥ “은행”은 “지방세 고지서” 내용에 대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지방세 고지서” 내용에 대한 문의가 응대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⑦ 고지서의 송달 시점은 “지체제”가 발송한 고지서가 “은행”의 서버에 저장된 시점으로 합니다.

제9조(지방세 납부)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앱”을 통해서 수신한 “지방세 고지서”의 금액을 “서비스 앱”에서 본인의 기 등록된 출금계좌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 앱”을 통해서 납부된 지방세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미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환급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③ “은행”은 납부를 위한 “지방세 고지서”금액에 대한 “이용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계약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은행”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주체 및 범위)

- ① 은행은 “서비스 앱”의 운영 및 관리, 수납정보, PUSH 메시지 발송, 수납정보 제공 및 납부 처리를 담당합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 납부금액에 대한 처리, 수납 및 고지내역 관련 응대를 담당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

손해배상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손해배상 및 면책 변경 부분을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부분을 따릅니다.

제14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